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공 안 부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와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는 두 나라 안전보위,公安기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 시킬것을 희망하면서 국경지역에서의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쌍방이 호상 협조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두 나라 국경지역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 사회재산 및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호상 협조한다.

1. 쌍방은 화재, 풍수해, 지진피해, 로동사고와 같은 각종 재해와 사고를 미리 막는사업에서 적극 협조하며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측 지역에 들어

은 상대방 주민들을 구원한다.

2. 일방은 상대방의 잃어버린 배, 짐짐승, 가금 그밖의 물건과 재산을 얻었을 때에는 보관하여야 하며 그것을 제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빠른시일안으로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은측은 빠른시일안으로 찾아가야 한다.

3. 쌍방은 자기측 국경지역에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생겨 상대측 지역으로 퍼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호상 협의하여 국경통행을 일시 막을수 있다.

4. 일방은 자기측 지역과 국경선에서 상대방의 국가사회재산 및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수있는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호상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일방은 국경지역에서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적과 죽은원인을 해명하고 죽은사람이 상대측 주민인 경우에는 넘겨주어야 한다.

발견된 시체가 두 측에 관계되는 범죄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검증하여야 한다.

죽은사람의 국적을 분간할수 없을 때에는 시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측이 처리한다.

6. 쌍방은 주민들의 생명과 국가사회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기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공동수역에서 무기와 폭약으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것을 금지한다.

7. 쌍방의 경비대와 경찰들은 국경에서 공무집행시 나라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파괴행위를 하려는자, 기타 국경 질서를 위반하는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폭력으로 반항하여 공무집행중인 쌍방 경비대와 경찰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을쏘지 말아야 하며 군전을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

제 2 조

쌍방은 두 나라 국경과 국경선상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사업에서 호상 협조한다.

1. 쌍방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공동경비구역으로한다.

경비임무수행의 편리를 위하여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일방의 경로에 가까운 구역의 경비는 그 일방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한다.

2. 쌍방은 쌍방의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탄 특별렬차가 국경다리를 통과할 때 국경다리 수역에 대한 호위경비사업

을 강화한다.

3. 두 나라 국경선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비는 쌍방의 해당부문에서 합의한데 따라 각각 자기측이 맡은 부문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4. 쌍방은 우에서 지정한 경비임무 수행에서 두 나라 국경지역과 국경지역 시설물들의 안전정형과 자료를 제때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 3 조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국경통행질서를 세우며 그들 유지하는 사업에서 호상 협조한다.

1. 쌍방은 호상 협의하여 필요한곳에 국경통행지점을 설정하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하며 국경통행질서 유지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쌍방은 국경통행자들에게 려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증, 공무국경통행증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갑》, 《을》) 과 쌍방의 합의를 거친 그밖의 증명문건을 발급하여주며 그에 지적인 통행지점으로만 통과시킨다.

3. 두 나라 국경지역의 시, 군, 현, 출입국사업기관과公安기관 책임일군들은 친척방문으로 상대측 국경지역에 려

행하려는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한달을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증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을》) 을 내여주며 이때 주민국경통행증에는 각기 규정된 전용도장을 찍어준다.

국경지역 주민들의 친척방문을 엄격히 검토하여 비준함으로써 상대측 지역에 가까운 친척이 있을 때에만 발급한다.

쌍방 국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초청통지서》에 의하여 발급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와 《초청통지서》의 양식, 사용방법은 쌍방 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국경안전, 공안총대표와 부총대표들은 국경지역에서 제기되는 사업처리를 위하여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1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국경통행증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갑》) 을 내여줄수있다.

4. 조중 국경지역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자동차 국경통행증》이 있어야 하며 그에 지정된 통행지점으로만 드나들며 상대측 경내에서는 지적된 도로와 지역안에서만 다닐수있다.

5. 국경통행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4월부터 9월까지의 평양시간으로 9시부터 20시까지, 베이징시간으로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10월부터 3월까지의 평양시간으로 9시부터 19시까지, 베이징시간으로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극히 필요한 경우 국경통행을 보장한다.

2). 제정된 통행시간이 아닌 때에는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따로 허가한 인원과 교통운수기재를 제외한 모든 인원과 교통운수기재들의 국경통행을 금지한다.

긴급한 요구로 제정된 시간 외에 국경을 통과하려는 인원들과 운수기재에 대하여서는 상대측 검사기관의 동의를 받고 통과시킨다.

6. 본 합의서 제3조 5항에 지적된 국경통행시간을 통행지점 국경검사기관들이 협의할수 있으며 만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와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의 비준을 받아 서로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7. 쌍방은 국경경비인원들과 국경지역 공무원, 주민교통운수기재들을 상대측 국경지역 도로로 통과시키려할 때에는 따로 합의된것을 제외하고는 상대측 국경안전,公安총

대표 또는 부총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쌍방 국경안전, 공안대표들 사이에 합의하여 통과시키고 자기측 총대표 또는 부총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국경지역의 해당부문에서 새로운 국경통행문제가 제기되면 사전에 쌍방 안전보위, 공안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쌍방은 비법월경을 막는데서 호상 협조한다.

1. 정당한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지적된 통행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은자들은 비법월경자로 처리한다.

그러나 각종 재해와 불가피한 사정 (정신병자 등) 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비법월경자로 보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증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을》) 을 가진 사람이 해당 출입국사업기관과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고 비국경지역으로 여행하였을 때에는 국경질서위반자로 보지 않는다.

2. 비법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측에

넘겨준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상대측 지역에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수 있으며 그 정형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쌍방은 범죄자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조한다.

1.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위반할수 있는 자들이 상대측 지역으로 도주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호상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나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품들을 가지고 상대측 지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사진, 인상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폭발물, 위험물질, 범죄내용 등 상세한 자료를 시간과 지점에 관계없이 곧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받은측은 그의 범죄행위를 막고 체포하기 위한 필요한 협조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방은 상대측에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해온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를 상대측에 즉시 넘겨주어야 한다.

일방은 상대측 지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넘어가 수사활동을 진행할수 없으며 상대측에 수사체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의뢰받은측은 빠른시일안으로 그를 체포하여 관계자료와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체포된 범죄자가 체포된측 지역에서 범죄를 감행하였을 때에는 체포한측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으며 그 정형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쌍방은 상대측 국경지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기나라안에서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자료조사를 상대측에 의뢰할수 있으며 의뢰받은측은 빠른시일안으로 조사정형을 회보하여야 한다.

3. 두 나라 사이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서로 협의하여 각각 자기측의 조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긴밀한 연계밑에 서로 정확을 통보하면서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4. 범죄위험분자가 상대측 지역으로 이주하여 갈때에는 상대측에 그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5. 일방은 상대측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온 사람들이운데서 신원이 애매한자들에 대하여서는 상대측에 신원조사를 의뢰할수 있으며 의뢰받은측은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6. 일방은 자기나라를 거쳐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제3국인들 가운데서 상대측의 안전을 해칠수 있는자를 발

견하였을 때에는 료해된 신분관계와 동향자료를 호상 통보 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범죄자들과의 투쟁에서 두 나라 국경 도, 성 안에서 제기되었거나 그와 관련되는 문제는 쌍방각급 안전, 공안대표가 처리하며 국경 도, 성 범위밖의 문제들은 수석대표 또는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일군이 처리한다.

제 6 조

쌍방은 국경을 접한 두 나라 시, 군, 현들을 조중국경 지역으로 하며 행정구역이 고쳐지는데 따라 국경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제때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과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 부부장을 조중 국경안전, 공안수석대표로 한다.

조중 쌍방은 국경안전, 공안총대표 1명과 부총대표약간명을 둔다.

조선측 안전총대표, 부총대표는 국경도안전보위부책임일군들과 국경지역의 국경경비사업 담당책임일군들이 하며

중국측 공안총대표, 부총대표는 국경성공안청 책임일군들과
변방사업 담당책임일군들이 한다.

쌍방은 적당한수의 안전, 공안대표를 둔다.

안전, 공안대표들은 국경지역 시, 군, 현안전보위, 공
안기관 책임일군들이 한다.

국경안전, 공안총대표, 부총대표는 각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장이
임면하며 안전, 공안대표는 각각 안전, 공안총대표가 임면
한다.

쌍방은 임면명단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각급 조중 국경안전, 공안대표들의 임무는 다음과같
다.

1. 조중 국경안전, 공안수석대표는 조중 국경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토의결정한다.

2. 조중 국경안전, 공안총대표들은 국경안전, 공안수
석대표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토의제정한다.

3. 조중 국경안전, 공안부총대표들은 안전, 공안총대

표의 사업을 방조하며 총대표가 없을 때에는 지정된 부총대표가 그를 대리한다.

4. 조중 국경안전, 공안대표들은 수석대표회의와 총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총대표, 부총대표가 준 과업을 조직집행한다.

제 9 조

쌍방 각급 국경안전, 공안대표들 사이의 호상 연락 및 협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중 국경안전, 공안수석대표들사이, 총대표, 부총대표들사이, 국경안전, 공안대표들 사이의 연락과 일상적인 사업처리는 전화, 서신, 인원파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할수도 있다.

2. 쌍방은 범죄자, 비법월경자, 자료, 물건, 재산의 인계인수는 그때마다 합의하여 편리한 임의의 지점으로 한다.

3. 조중 국경안전, 공안수석대표회의는 3년에 한번씩, 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는 2년에 한번씩 한다.

회의장소는 쌍방이 룰번제로 정하며 회의 의장은 회의가 소집되는 지역의 대표가 한다.

쌍방이 회의를 소집하며 할때에는 조중국경안전, 공안

수석대표들 사이에는 40일전, 국경안전, 공안총대표들 사이에는 1달전, 부총대표와 대표들 사이에는 각각 5일전에 상대측에 날짜, 장소, 의안, 참가인원수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회의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각급 안전, 공안대표가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안전, 공안총대표가 발급한 대표증을, 안전, 공안총대표와 부총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장 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장이 수표하여 발급한 대표증을 가져야 한다.

제 10 조

이 합의서는 쌍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호상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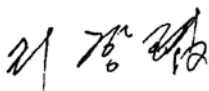
쌍방의 통지시간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에 다른 일방이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체약 쌍방의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다른 일방에게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여 통지하지 않는 한 합의서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계속 5년씩 연장된다.

이 합의서는 1998년 7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글과 중국글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대표



李紀周